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15재다1695 소유권말소등기
원고(재심원고) 1. 중앙통운 주식회사
2. 남양화물 주식회사
피고(재심피고) A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5. 9. 10.자 2015다219955 판결
판 결 선 고 2016. 1. 28.

주 문

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재심이유를 본다.

원고(재심원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들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

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.

하지만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,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여지가 없으므로,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(대법원 1996. 2. 13.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).

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,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김창석
-----	-----	-----

	대법관	이상훈
--	-----	-----

	대법관	조희대
--	-----	-----

주심	대법관	박상옥
----	-----	-----